

# 조 례 안 예 고

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- 112호

## 창원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

「창원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창원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13일

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

### 1. 자치법규명

「창원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」

### 2. 제정이유

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인권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
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피해 장애인 보호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에  
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마.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련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 
규정함(안 제7조)
- 바.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8조 및 제9조)

### 4. 의견제출

- 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8일까지 다  
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)  
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의견제출 사항
  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  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의견 제출할 곳: 우)51435 /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 
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(전화:055-225-5375, FAX:055-225-4743)
- 라. 의견제출 방법: 우편, 팩스, 이메일(jeonhr1@korea.kr), 직접 방문 등

# 창원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

(오은옥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1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0. 13.

발 의 의 원 : 오은옥 · 김경희 · 김남수 · 김묘정 · 김상현  
박해정 · 백승규 · 서명일 · 심영석 · 이우완  
이종화 · 전홍표 · 정순욱 · 진형익 · 최은하  
황점복 의원(16명)

찬 성 의 원 : 김미나 · 김수혜 · 문순규 · 이원주 의원(4명)

## 1. 제안이유

- 지적장애인을 약취·유인하여 수년간 감금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폭행과 학대를 일삼는 ‘염전노예’, ‘절도노예’, ‘축사노예’ 등 인신매매성 범죄, 노예범죄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고, 지적장애인의 재산을 갈취하거나 장애인 명의를 가로채서 카드를 발급하고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의 경제범죄도 적지 않아 지원대책이 필요한 실정임.
-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인권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(안 제3조 및 제4조)

- 다. 피해 장애인 보호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마.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련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바.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8조)
- 사.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 법령

## 창원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·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인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장애인범죄”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.
3. “장애인 거주시설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창원시장(이하 “시장” 라 한다)은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**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장애인범죄 예방 및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5조(피해 장애인 보호·지원)** 시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1. 장애인 및 보호자(친권자, 「민법」에 따른 후견인, 장애인을 보호·양육

·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·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·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

2.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신고체계 마련

3.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·심리상담 등 지원

4.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

**제6조(장애인 거주시설 점검)**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.

**제7조(교육 및 홍보)** ① 시장은 장애인, 보호자,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, 교육기관, 민간단체,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.

**제8조(협력체계 구축)** 시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고,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**제9조(포상)** 시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대하여 「창원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■ 장애인복지법

제2조(장애인의 정의 등) ①“장애인”이란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.

④ “장애인학대관련범죄”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.

1. 「형법」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(살인, 존속살해), 제252조(촉탁, 승낙에 의한 살인 등), 제253조(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) 및 제254조(미수범)의 죄
2. 「형법」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(상해, 존속상해), 제258조(중상해, 존속중상해), 제258조의2(특수상해), 제259조(상해치사), 제260조(폭행, 존속폭행) 제1항·제2항, 제261조(특수폭행) 및 제262조(폭행치사상)의 죄
3. 「형법」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(유기, 존속유기)제1항·제2항, 제272조(영아유기), 제273조(학대, 존속학대), 제274조(아동혹사) 및 제275조(유기등 치사상)의 죄
4. 「형법」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(체포, 감금, 존속체포, 존속감금), 제277조(중체포, 중감금, 존속중체포, 존속중감금), 제278조(특수체포, 특수감금), 제280조(미수범) 및 제281조(체포·감금등의 치사상)의 죄
5. 「형법」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(협박, 존속협박)제1항·제2항, 제284조(특수협박) 및 제286조(미수범)의 죄
6. 「형법」 제2편제31장 약취,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(미성년자의 약취, 유인), 제288조(추행 등 목적 약취, 유인 등), 제289조(인신매매) 및 제290조(약취, 유인, 매매, 이송 등 상해·치상), 제291조(약취, 유인, 매매, 이송 등 살인·치사) 및 제292조(약취, 유인, 매매, 이송된 사람의 수수·은닉 등) 및 제294조(미수범)의 죄
7. 「형법」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(강간), 제297조의2(유사강간), 제298조(강제추행), 제299조(준강간, 준강제추행), 제300조(미수범), 제301조(강간 등 상해·치상), 제301조의2(강간등 살인·치사), 제302조(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), 제303조(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) 및 제305조(미성년자에 대한 간음, 추행)의 죄
8. 「형법」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(명예훼손), 제309조(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) 및 제311조(모욕)의 죄
9. 「형법」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(주거·신체 수색)의 죄
10. 「형법」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(강요) 및 제324조의5(미수범)(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)의 죄

11. 「형법」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(사기), 제347조의2(컴퓨터등 사용사기), 제348조(준사기), 제350조(공갈), 제350조의2(특수공갈) 및 제352조(미수범)의 죄
  12. 「형법」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(횡령, 배임),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 및 제357조(배임수증재)의 죄
  13. 「형법」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(재물손괴등)의 죄
  14. 제86조제1항·제2항, 같은 조 제3항제3호,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
  15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제23조(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)의 죄
  16.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의 죄
  17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
  18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4조제1호 및 제11호의 죄
  19.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
- 제58조(장애인복지시설)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장애인 거주시설: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·요양·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
  2.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: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·치료·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,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
  3. 장애인 직업재활시설: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(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·가공 시설,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)
  4. 장애인 의료재활시설: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, 진단·판정,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 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-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59조의4(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(이하 “장애인권익옹호기관”이라 한다)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

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
1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(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「병역법」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무요원을 포함한다)
2.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
3.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
4.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조의2의 의료기사
5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의 응급구조사
6.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
7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,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,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8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
9. 「유아교육법」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
10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
11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·강사·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·직원
12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,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13.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
14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15.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16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17. 「아동복지법」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「아동복지법」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
- 18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- 19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
- 20.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·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- 21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
- 22. 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
③ 삭제
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⑥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⑦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·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⑧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·방법 등의 안내, 제5항에 따른 조치,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교육 내용·시간·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1조(감독)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·장부, 그 밖의 서류를 조사·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, 조사범위, 조사담당자,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제62조(시설의 개선, 사업의 정지, 폐쇄 등)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, 사업의 정지, 시설의 장의 교체 등을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.

- 1. 제59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
- 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·검사 및 질문을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때

3.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
  4.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,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
  5.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
  6.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
- ② 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이 제60조의3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, 사업의 정지,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

## ■ 범죄피해자 보호법

- 제5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,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- 제7조(손실 복구 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·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, 의료제공(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), 구조금 지급, 법률구조, 취업 관련 지원, 주거지원,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·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(이하 “보호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, 「의료법」에 따른 종합병원,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를 설립·운영하는 학교법인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.
- ④ 보호시설의 설치·운영 기준, 입소·퇴소의 기준 및 절차, 위탁운영의 절차, 감독의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